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 26 선고 2020가단537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대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박종학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남궁율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4. 5. 접수 제126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휘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 소유이던 여주시 F 토지에서 2009. 8. 4.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다. 피고는 2010. 4.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2. 1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종중재산을 처분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00인 이상의 종원이 참석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종중 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이나 100인 이상의 종원이 참석한 총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G에 의하여 원고 종중의 총회결의 없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9. 11. 5.자 정기총회에서 G을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 및 전임 집행진들에 의하여 위법하게 처분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재 환수에 관한 결의(의안 3호)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및 갑 3, 4호증, 을 3, 4, 5, 6, 7,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정관 제27조, 제28조는, ‘중중재산의 취득, 처분, 대여, 사용, 수익 등의 의결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본 총회의 재산의 취득, 처분, 대여, 사용, 수익 등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조 처분 의결시는 총회참석인원 1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06년부터 불법 매각된 중중재산 환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절차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토 매각을 결의하여 매각해왔다.

3) 원고의 2008. 10. 18.자 이사총회의 회의록(을 6호증의 1)에 첨부된 ‘11번-6 법적절차 수임료, 소송비 및 행정비등 충당비용 토지매각 의결 현황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표에는 ‘※ 2006 정기총회 의결, 2006~7 이사회 총회기의결, 08. 11. 2. 총회보고의결, 08~09 집행(09 이사회)’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2008. 11. 2.자 정기총회 회의록(을 3호증)에는 정기총회를 통하여 위 이사총회에서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의 2009. 2. 26.자 이사총회의 회의록(을 6호증의 2)에 의하면, ‘여주시 F, H, I, J 내의 임야 일부 20필지내 분할과 자투리 토지와 그 외 등 불용토지를 매각 법적절차 승소회복정리비용 집행 등을 총회위임에 이사회의결 건’을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후 여주시 F 토지에서 2009. 8. 4.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7) 2009. 11. 17. 개최된 원고의 정기총회 회의록(을 4호증)에 의하면, 의안 제27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8필지의 매매대금을 원고 중중의 종토를 되찾는 등기비용으로 지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8) 원고의 2010. 2. 27.자 이사총회 회의록(을 6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총회는 ‘여주시 F, H 내의 임야 일부 18필지내 분할과 자투리토지 15필지와 그 외 등 불용토지를 매각 법적절차 승소회복정리비용 집행 및 08년도 총회의결된 안건에 대한 종사 집행함을 총회위임에 이사회의결 건’을 1호 의안으로 처리하였고, ‘의장은 위 안건은 08-09-2010년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건으로 위임집행의 설명사항으로 본 총회 종재의 재산세, 경비, 피압류대처 등 총회 의결된(08-09) 안건을 집행하기 위한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K리 소재 임야 일부 분할매매 유첨부내용현황을 총회위임 이사회집행을 득할 것을 주지설명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0) 2011. 10. 28. 개최된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의안 제6호로 이 사건 토지 포함한 종중 토지들에 대하여 매각결의를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2006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 2007년 이사회, 2008~2009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토의 매각에 대한 결의가 계속하여 이어져 오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 2011년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토에 대하여 다시 매각결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사회 결의와 총회결의가 없어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임대호